



# 주요국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비교 및 시사점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분석관

## 논의 배경

▪ 장애인소득보장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장애인 빈곤 지표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단순 급여 지원을 넘어 노동시장 참여 유인 관점에서 현행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장애인소득보장 사업<sup>1)</sup>의 결산액은 2025년 1조 2,233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1% 증가하여 지속적인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최근 5년간 35% 내외에서 정체되어 있으며<sup>2)</sup>, 실태조사 결과 최우선 요구사항은 소득보장(43.9%)으로 조사되어<sup>3)</sup> 현금지원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소득 불안 해소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창출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소득보장제도를 근로 유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제도 현황

▪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 저소득층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급여를 운영하고 있음

- (장애인연금)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sup>4)</sup> 이하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sup>5)</sup>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됨
  - 2026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월 43만 9,700원(기초급여+부가급여)이며, 수급자 규모는 2025년 기준 33.5만명임
-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sup>6)</sup>에 해당하는 경증장애인<sup>7)</sup>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목적의 정액 급여임
  - 2026년 기준 월 지급액은 6만원이며, 수급자 규모는 2025년 기준 41.3만명임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액과 가구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하여 선정기준액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보충급여 구조를 취하고 있음
  - 생계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 소득보장제도이나,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해당 제도의 수급액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됨
  - 2026년 선정기준액은 1인 가구 월 82만원, 2인 가구 월 134만원 등이며, 2025년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47만 가구임

1)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소관 단위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지원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 운영으로 구성됨

2) ('20)35.7% → ('21)34.5% → ('22)35.7% → ('23)35.3% → ('24)35.4%, 국가데이터연구원,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026.3)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2023.11)

4)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224만원임

5) 중전 1급, 2급, 3급 중증장애인을 말함

6)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하며, 2026년 선정 기준액은 1인 가구 월 128만원, 2인 가구 월 210만원 등임

7)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함

[표 1]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비교표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생계급여
지원 대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선정 기준액	(단독) 140만원 (부부) 224만원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동일 (차상위) 128만원	(1인 가구) 82만원 (2인 가구) 134만원 등
월 최대 지급액	(기초급여) 34만 9,700원 (부가급여) 9만원	6만원	선정기준액과 동일
소득인정액 산식	[근로소득 - 95만원] × 70%	[근로소득 - 20만원] × 70%	
수급 규모	33.5만명	41.3만명	47만 가구

주: 1. 수급 규모는 2025년 12월 기준임  
 2. 생계급여 수급 규모는 장애인 가구만을 집계한 것임  
 3. 제도 간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급여는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컷오프(Cut-off) 구조와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급여 감액으로 인해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약화할 우려가 있음

- (컷오프 구조)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기능보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선정기준액 초과 시 급여가 전액 미지급되는 컷오프 구조를 취하고 있어 수급자의 자발적인 근로 확대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
  - 한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컷오프 구조에 더하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급여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sup>8)</sup>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소득 상승 구간에서 근로소득 증가분이 상쇄되어 추가 근로의 실익이 저하됨
- (급여 감액)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에서 월 20만원을 기초공제하고 잔여 소득의 30%를 공제하고 있으나<sup>9)</sup>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근로소득 증가분이 급여액에서 상당 부분 상쇄됨
  - 2025년 기준 장애인 가구의 근로소득 증가분 대비 생계급여 감소분의 비율이 56.3%로 나타나, 근로를 통한 실질적 소득 상승이 제한적임

미국의 SSI

▪ 미국의 보충적 보장소득(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은 장애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연방정부의 공공부조형 소득보장제도임

- SSI는 소득인정액이 연방정부 기준액 미만인 가구에 대해 그 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하며, 의학적 기준 및 실질적 수익 활동 가능성<sup>10)</sup>을 검토하여 수급 자격을 심사함
- 2026년 기준 연방정부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994달러(≈ 141만원), 부부가구 월 1,491달러(≈ 240만원) 수준임<sup>11)</sup>

8)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단계적으로(2만원 단위) 감액하여 지급함. 이에 소득인정액 상승분만큼 기초급여액이 감소되므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이 선정기준액 수준에서 정체를  
 9)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에 대해서는 50%의 공제율이 적용됨  
 10) 2026년 기준 월 소득 1,690달러(시각장애인의 경우 2,830달러) 이상의 수익 활동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함  
 11) 각 주정부는 자체 재정 여건 및 정책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미국은 취업 및 소득 증가 등 수급자의 자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소득·자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기부양계획(PASS; Plan to Achieve Self-Support)을 운영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있음

- 동 제도는 수급자가 사회보장국(SSA)에 자립목표, 실행계획, 소요 자금 등을 포함한 서면 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승인받아 운영되는 맞춤형 지원 제도로서, 이를 통해 수급자는 급여 삭감 및 중단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장기적 자립 경로를 설계할 수 있음

## 영국의 PIP & UC

- 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개인자립수당(PIP; Personal Independence Payment)과 공공부조 성격의 보편신용급여(UC; Universal Credit)로 이원화되어 운영됨

- (PIP) 의료전문가의 기능평가 결과에 따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급하며 중증도에 따라 상이한 단가를 적용함

-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점수화하여 수급 자격 및 중증도를 심사하며, 각 항목별로 중증 기준 월 458.4파운드(≈86만원), 320파운드(≈60만원)를 지급함<sup>12)</sup>

- (UC) 가구 유형, 자녀 수, 장애 여부 등을 반영하여 가구별 최대 지급액을 설정하고, 소득 인정액과 최대 지급액의 차액을 지급함

- 2026년 기준 UC 기본수당은 가구 유형에 따라 월 338.6~667파운드(≈63~125만원)이며, 근로 관련 활동 불가(LCWRA; Limited Capability for Work and Work-Related Activity) 판정을 받는 경우 월 217.3파운드(≈41만원)가 가산됨<sup>13)</sup>

- 영국은 장애로 인한 기능보상(PIP)과 소득보장(UC)의 역할을 분리하여, 근로 소득 증가로 인한 급여 중단 위험을 차단하고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제공함

- 우리나라의 장애인연금은 소득보장(기초급여)과 기능보상(부가급여)이 결합되어 있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전체의 지급이 중단됨

- 그러나 영국의 PIP는 장애로 인한 기능 제한 여부만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심사하고, 수급자의 소득·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정액을 지급하여 기능보상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수급자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함

## 프랑스의 AAH

- 프랑스는 장애로 인해 최소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제도인 성인장애수당(AAH; 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을 운영하고 있음

- 20세 이상의 장애인 중 ①장애율 80% 이상이거나, ②장애율 50~79%이면서 노동시장 접근이 실질적으로 제한된 자를 대상으로 소득 심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부여함<sup>14)</sup>

- 장애인 권리 및 자립 위원회(CDAPH)는 독립적인 일상생활 가능성 및 사회참여 제약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율을 판정하며, 장애로 인한 근로 제한의 지속성과 상당성을 심사하여 노동시장 접근 제한 여부를 결정함

- 2026년 기준 AAH의 최대 지급액은 월 1,041.6유로(≈167만원)로, 최대 지급액과 소득 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함

12) 경증 기준 306.8파운드(일상생활), 121.2파운드(이동)임

13) LCWRA는 영국 노동연금부(DWP)가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보행 및 이동성, 상지 도달 범위 등을 점수제 방식으로 심사하여 판정함

14) 참고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권을 보장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을 배제하고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심사하는 '배우자 소득 합산 배제'가 2023년부터 전면 도입됨

▪ 프랑스는 노동시장 진입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 구간별 차등 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취업 초기 일정 기간의 근로소득을 전액 공제하고 있음

- 수급자의 세전 근로소득 중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한 월 급여액(SMIC)의 30% 이하 구간<sup>15)</sup>에 대해서는 80%를 공제하고, 그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40%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만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함
  -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구간에 대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급여액의 감소를 완화하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제고함
- 특히, 근로 개시 후 첫 6개월간 발생하는 소득은 10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급여액을 보전함으로써 수급자가 급여 감액에 대한 부담 없이 취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표 2]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비교표

구분	미국(SSI)	영국(PIP&UC)	프랑스(AAH)
월 최대지급액	994달러 (≈141만원)	(PIP) 778.4파운드(≈146만원) (UC) 624.2파운드(≈121만원)	1,041.6유로 (≈167만원)
소득인정액 산식	[근로소득-85달러]×50%	[근로소득-710파운드 <sup>1)</sup> ]×55%	[(SMIC 30% <sup>2)</sup> 이하 소득]×20% +[(SMIC 30% 초과 소득)×60%]
근로 유인 제도	PASS제도 운영	PIP는 소득 무관 지급	소득 구간별 차등 공제 근로 초기(6개월) 전액 공제
수급 인원	623.3만명	(PIP) 364.1만명 (UC) 165.4만명 <sup>3)</sup>	139.8만명
집행액	583.9억달러	(PIP) 258.7억파운드 (UC) 173.1억파운드	127.2억유로

주: 1. 원화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 제공하는 2025년 평균 환율로 환산한 것임  
 2. '월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함  
 3. 수급인원 및 집행액은 미국, 영국의 경우 2024년, 프랑스의 경우 2023년 기준임  
 1) 주거지원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한 월 급여액(SMIC)의 30%로, 2026년 기준 월 546.9유로임  
 3) LCWRA인원만을 산정한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결론 및 시사점

▪ 주요국의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급여 체계가 장애인의 근로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수급자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립 지원을 위한 재산 산정 기준 보완) 미국의 PASS와 유사한 자산 형성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등 재산 산정 기준을 보완하여 단순한 근로소득 공제에서 나아가 수급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능보상 급여의 안정성 제고) 소득보장과 기능보상이 결합된 현행 장애인연금의 구조를 개선하여, 영국의 운영 사례와 같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기능보상 급여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해당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근로 초기 공제 강화 및 고용 지원) 수급자가 급여 감액에 대한 부담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프랑스의 사례를 참조하여 취업 초기 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사업과 연계하여 양질의 고용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15) 2026년 기준 월 546.9유로임